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75

발의연월일: 2022. 6. 28.

발 의 자: 천준호·강민정·강선우

강은미 · 고민정 · 권인숙

김경만 · 김민철 · 김상희

김승원 · 김영주 · 김영호

김윤덕 · 김의겸 · 김주영

김철민 · 김한정 · 김회재

남인순 · 노웅래 · 류호정

박상혁 • 박영순 • 박재호

박주민 • 박찬대 • 배진교

서영교 · 서영석 · 신현영

심상정 · 어기구 · 오영환

용혜인 · 유정주 · 윤영덕

유재갑 • 이소영 • 이수진

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용우

이은주 · 이인영 · 인재근

임종성·장경태·장혜영

조승래・조오섭・강득구

최종윤 · 최혜영 · 한병도

한준호ㆍ허 영ㆍ허종식

홍기원·홍정민 (59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, 도지사는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,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경 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 또한 특 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·광역시·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, 국가 또 는 시·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5항 등).

주요내용

가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·광역시·도까지로 확대

함(안 제16조제5항).

- 나.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(안 제16조제7항).
- 다.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 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(안 제16조제9항 신설).
- 라. 국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(안제16조의2제2항 신설).
- 마.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"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체계 구축 현황"을 조사하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5항 본문 중 "된다"를 "되며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인 근 특별시·광역시·도까지로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7항 중 "자금의 일부를"을 "자금을"로,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"자동차"를 "자동차(이하 "택시"라 한다)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그 밖에 제1항"으로, "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"을 "운행"으로 한다.

② 국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제1 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의2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체계 구축 현황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~ ④ (생 략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 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되며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 위는 인근 특별시・광역시・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. 운 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 까지로 하여야 한다. <단서 삭 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 제> 역시 · 도까지로 할 수 있다. 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 ⑦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(7) -----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 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 센터의 설치 ·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-------지원하여야 한다. 있다. ⑧ (생략) (8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⑨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

⑨·⑩ (생 략)

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 지
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교통
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
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
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
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
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<u>자동차</u>
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
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구
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
에는 관계 특별시장・광역시장
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
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
고려하여야 한다.
<u>⑩</u> ・ <u>⑪</u> (현행 제9항 및 제10항
과 같음)
세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
①
<u>자동차</u>
(이하 "택시"라 한다)
② 국가 또는 특별시·광역시
・ 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
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
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
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
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<u>운행</u>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.
- 제25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 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 1.•2. (생 략)
 - <신 설>
 - 3. ~ 6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③ 그 밖에 제1항
<u>한</u> 행
제25조(실태조사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
계 체계 구축 현황
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